

경기인등록규정 개정 내용

현 행	변 경
<p>제1장 총칙 제8조(외국인등록 및 대회참가) ②외국인선수 대회참가는 ~중략 가)등록된 소속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.</p> <p>나)각종육상경기대회 트랙경기 중 100m~400m까지의 결승경기 에는 3명에 한하여 진출할 수 있으며, 필드경기 또한 3명까지 진출할 수 있다.</p> <p>2. 로드레이스대회는 등록된 소속으로 전반기 1회, 하반기 1회에 한해서 참가할 수 있으며, 그 외는 소속 국가명으로 참가할 수 있다.</p> <p>③외국인선수로 등록된 자는 제②항에 해당되는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을 하여도국내소속으로 시상할 수 없다. 단,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심사후 국내소속으로 시상이 가능하다.</p>	<p>제1장 총칙 제8조(외국인등록 및 대회참가) ②외국인선수 대회참가는 ~중략 가)등록된 소속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(국내개최 국제대회 포함)에 참가할 수 있다.</p> <p>나)각종대회(국내개최 국제대회 포함)트랙경기 중 100m~400m까지의 결승경기에는 3명에 한하여 진출할 수 있으며, 필드경기 또한 3명까지 진출할 수 있다.</p> <p>③외국인선수로 등록된 자는 대회에참가하여 입상을 하여도 국내소속으로 시상할 수 없다.</p> <p>④대한민국 국적(2중 국적포함)을 취득 하였을 경우에는 심사 후 국내소속으로 시상을 할 수 있다. 주) 국내개최 국제대회일 경우 국제부문에 한하여 시상한다.</p>